

특례입학대상자(정원 외)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1. 지원 자격(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라북도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의함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 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 등	제4호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귀국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	제1호	제2호 가목	제2호 나목	제2호 다목		제3호	제4호	비 고
				부모 모두가 외국인 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졸업)증명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외국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 교육부 누리집 미탕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 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유학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초·중·고 ○ 최종 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사실 증명서	<input type="radio"/> (학생)	<input type="radio"/> (부모, 학생)	<input type="radio"/> (부모, 학생)	<input type="radio"/> (학생)	<input type="radio"/>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주민센터,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전가족주민등록 등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누리집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자녀에 한하여 제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input type="radio"/> (부모, 학생)	<input type="radio"/>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input type="radi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행정구청 (해당기관장 발행)
학력인정증명서	(○)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과 발행
한부모가족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훈인관계증명서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기록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 해당 기관
예방접종확인서	(○)	(○)	(○)	(○)	(○)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2016. 교육부 '학생 감염예방 종합대책'(2016. 2.)}}
학부모 확인서	○	○	○	○	○	○	○	○ 학부모 자필 확인서(서식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외국 거주 기간 및 체류 확인을 위한 서류 (특례입학대상자 본인, 부, 모 제출)	(○)	○	(○)	(○)	(○)			○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 제3국 수학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고, 영문도 학교에서 필요 시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 받은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해당 목록부분을 인쇄하여 별도의 확인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고 홈페이지 미탑재의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해당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 구비 서류 발행처 등
 - 출입국 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문의: 외국인종합안센터 ☎1345),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24사이트
 -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24사이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24사이트
 - 예방접종확인서-구비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류
 - 발행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발급 방법: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산등록 요청 후 전산등록이 완료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혜모필루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Tdap/Td(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위 내용은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처리 요령(교육부 고시 제2015-70호, 2015.8.28.)」, 전라북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시행계획(2022.5)」에 의거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사항 확인